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2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17.

다.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Ⅲ. 검토의견

1. 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	☐ 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
○ 적용기한 - 재활용폐자원: 2028. 12. 31. - 중고자동차: 2028. 12. 31.	○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중고자동차 및 <u>폐자동차</u> : 2028. 12. 31.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3 - 중고자동차: 110분의10	○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중고자동차 및 <u>수출용 폐자동차</u> : 110분의10 - <u>수출용 외의 폐자동차</u> : 108분의8
<u><신 설></u>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강득구의원안 2025. 12. 17. 발의(의안번호 15329)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매출세액에서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입금액에 이미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원용하여 해당 부분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특례라고 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는 재화로서의 성격이 상이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차이가 있음.

먼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중고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고유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용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내재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중고자동차 가격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한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 중고자동차 잔존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재활용폐자원은 재화로서 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재활용 폐자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조세지원을 통해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 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 현재 폐자동차의 경우 중고자동차가 아니라 재활용폐자원(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으로 분류되어 3/103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에 따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구 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110조제4항 ¹⁾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3/103	10/1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 가. 고철
 - 나. ~ 차. (생략)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110분의 10의 공제율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지속적인 공제율 축소로 현재 103분의 3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고, 중고자동차는 109분의 9~11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다가 2017년 7월 중고자동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부터 110분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매입세액 공제율 변천과정]

구분	1994년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현재
재활용폐자원	10/110	8/108	6/106	6/106	5/105	3/103	3/103
중고자동차	10/110	10/110	10/110	9/109	9/109	9/109	10/110

이러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2024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1조 5,370억원으로, 동 특례와 관련한 조세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6년에는 1조 8,23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감면액	9,453	9,891	11,760	14,409	13,853	15,370	17,680	18,23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²⁾는 폐차를 요청하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후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체하여 중고부품으로 판매하고, 잔여물질은 고비철 등 재활용물질로 판매하게 됨.

이에 대하여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폐자동차를 수출용과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로 구분하고, 수출용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은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용 폐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의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폐자동차라 하더라도 완차 형태로 수출될 경우 경제적 실질은 일반 중고자동차 수출과 동일하므로,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공제율(10/110)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뿐, 자동차를 폐차 및 해체·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와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³⁾,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시점에는 아직 말소등록 또는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를 운행 가능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법적·사실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4)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에서는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둘째, 수출용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수출업자의 실질 매입원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가격 인하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음. 매입세액 공제액이 폐자동차 취득원가의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출용 폐자동차 공급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업자의 중고자동차 가격경쟁력이 상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수출용 외 폐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폐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103분의 3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정상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불투명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과세기반 누수를 보완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만이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할 수 있고,⁵⁾ 폐차 절차과정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영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을 활용하여 차종·연식·주행거리·소유자 등 정보 및 등록번호판 사진 등을 기록·보관⁶⁾하여야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수출용 외 폐자동차의 말소·폐차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어 거래투명성이 강화되었음.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농산물등을 제조·가공한 음식점업·제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104분의 4~108분의 8을 적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래투명성이 높은 수출용 외 폐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임.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 분		공 제 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용 외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의 정책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폐자동차의 재활용 의무비율이 95%⁷⁾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유입물량 증가 및 추가 폐자원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2025년 실시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과 폐자원 재활용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과 구분하고 공제율을 별도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해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해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첫째, 수출용 폐자동차와 수출용 외 폐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근거법률의 취지와 다른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절차와 거래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음. 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말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폐차는 일반 폐차와 수출용 폐차 모두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말소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는 소유권의 이전등록 절차에 기반하여 진행됨.

한편, 폐자동차의 경우 취득시 폐차를 전제로 폐차 대가를 고철가액 등을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⁸⁾하는 반면, 중고자동차는 차종·연식·운행거리 등 자동차의 상태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기반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관리법」상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는 법률상 폐차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매매목적으로 공급받은 자동차와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폐차 요청된 자동차는 폐차되어야만 하므로 일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자동차 취득 시 지급하는 금액도 판매 목적의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공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8)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⁹⁾

둘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폐자동차의 용도가 내수용인지 수출용인지에 따라 공제율 적용이 달라지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단계에서 폐자동차의 최종 용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받고 있음. 폐자동차의 매입단계에서는 수출용인지 수출용 외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출용과 수출용 외 공제율 간 차등 적용으로 매입당시에는 높은 공제율(수출용 10/110)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선 공제받은 후 사후적으로 내수용으로 처리하는 부당 공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수출 이행여부는 「자동차등록령」상 1년 이내 수출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¹⁰⁾, 수출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적발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거래 투명성, 수출 또는 자원순환 확대 등의 긍정

9) 서울고법 2020누36528, 2021. 1. 22.

10)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 측면과 함께, 수출용과 수출용 외로 구분하여 별도 설정할 경우
법적 정합성 및 부당공제 가능성 등 고려사항이 있음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공제율 상향 여부 및 상향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
가 있음.¹¹⁾

문 의 처
02)6788-5147

11) 재정경제부는 중고차와 폐자동차는 재화의 성격, 가격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폐자동차를 기타 폐자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공제율 상향시 상당 수준의 조세일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폐차의 공제율 상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